

행정기관명

수신

제 목

아래의 공매재산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2조제1항 각 호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신 공매보증금을 귀하(귀법인)에게 반환하오니, 년 월 일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[illegible]

77
E.

발신 명의 직인

기안자

검토자

결재권

협조자

시행

처리과

접수

처리고

우

도로명

/ 흠표

전화부

팩스번호

/ Fc

/ 공자